

기 술 정 보

기술정보지 통권 제73호 (2020년 1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창원시 의창구청 조감도〉

목 차

<p>■ 건설 관련 소식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도,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안전점검 실시 - 경남도, 건설공사 예산 등 신속집행으로 '코로나19' 여파 조기 차단 주력 - 경남도, '건설현장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노력 -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총력 지원 <p>■ 국토교통 뉴스 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칩니다. - '19.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 -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p>■ 최신법령 및 법령해석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p>■ 신기술 정보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 굴착하는 터널공법 -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강교량 피로균열 자동 검사 기술 및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 기술 -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p>■ 2020 건설기술심의 현황 26</p> <p>■ 기술인 나눔 정보 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행 일정 -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 업무 처리요령 안내
--	---

경남도,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안전점검 실시

- 3월 4일부터 17일까지 공사 시행 중인 16개
현장 전체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3주에 걸쳐 도내에서 시행 중인 16개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첫 대상지로 김해와 양산 지역에 위치한 ‘매리-양산, 생림-상동(이상 국지도60호선), 대동-매리(국지도69호선) 구간’ 등 주요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출입자 체온 점검 및 손 소독제 비치 상태, ▲감염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외국인 근로자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김해·양산 지역 현장에서는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 지침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도는 이달 내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완료하고, 추가 예방교육을 실시해 공사 현장에서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최근 급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당분간 현장 숙소에 머무르도록 하고, 근로자의 현장 투입 전후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과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은 현장 내 식당에 대한 방역 강화 등 감염 예방 활동에 협조할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주문하였다.

윤 국장은 점검 후 현장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공사 현장 관계자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예산 집행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현장 근로자의 안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료 : 도 도로과(O55-211-2963)

경남도, 건설공사 예산 등 신속집행으로 '코로나19' 여파 조기 차단 주력

- 상반기 중 68% 집행 목표, 중소 하도급업체 자금 유동성 확대 기대
- 선급금 지급률 상향(최대 70%), 기성검사 기간 절반단축 조기집행
- 건설현장 근로자 건강상태 점검 등 '코로나 19' 적극 대응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공사 예산을 신속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건설현장의 경제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조기 차단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며 지역 건설업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집행대상은 경남도와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 등에서 계획 중인 도로, 하천 등의 SOC분야와 교통 등 생활 밀접형 부분으로 ▲도로공사 38개 사업 1,882억 원, ▲하천공사 44개 사업의 1,326억 원, ▲교통 등 생활SOC 20개 업체 95억 원 등 총 102개 사업, 3,303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 등에 대해 선급금 지급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기성검사 기간을 단축해 상반기 중 68%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코로나19 여파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체에 운행손실 보전금으로 지원할 재정지원금 약 95억 원도 이번 신속집행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상태 점검 등 현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141개 사업장 6,756여 명(외국인 985명)의 건설현장에 코로나19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건설 공사별로 매일 출근 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격리조치 하게 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건설현장 내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지정해 현장-유관기관(보건소 등) 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확진환자 발생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윤인국 도 도시교통국장은 “어려운 시기에 투자규모가 큰 SOC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자료 : 도 도시계획과(O55-211-4216)

경남도, '건설현장 코로나19' 예방·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노력

- 위생물품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활용
- 공공·민간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약조정
- 선금금 지급율 상향, 기성검사 기간 절반 단축으로 조기집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현장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구축된 전담체계와 대응 계획이 담겨있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민간공사 불가항력 유권해석 등을 명시해 건설현장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생물품구입과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공공·민간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계약금 약 조정 △현장 출입 관리 및 현장 내 소독·방역에 철저 등이다.

특히 선금지급률 최대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토록 하는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알려,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재정을 최대한 적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계약해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기성금 신청 시 기성검사 기간(현행 14일)을 절반으로 단축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각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어려운 시기에 건설공사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5)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 총력 지원

- 지역건설경기 활력 제고 위한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
- 대기업 본사 방문 세일즈 및 건설업 혁신 토론회 등 신규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침체한 지역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2020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수주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력제고’를 비전으로 삼고 ▲제도운용 확대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 ▲경쟁력 강화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세부 실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게 된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제도운용 확대’ 분야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운용 확대,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용 등이 포함됐다. 소극적으로 운용되는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공공기관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맞춤형 수주지원 활동’은 민관합동세일즈,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 대기업 본사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세일즈 활동으로 현장이나 본사 관계자를 통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수주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일회성으로 그쳤던 민관합동세일즈 활동을 올해부터는 모니터링과 연계 추진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시군에서는 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과 지속적인 공사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중소전문건설업 역량강화 지원사업’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지원을 추진한다.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지역의 전문건설업체가 1대 1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5개사에 이어 올해도 10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공공발주 공사는 물론 도내 공사 발주액의 70%를 차지하는 민간공사에 참여할 기회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 3.1%인 협력업체 등록비율을 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는 건설대기업, 발주기관, 지역건설 관련협회 등과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상사업의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건설업혁신 토론회’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건설산업 현안에 대한 건전한 토론으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협력을 강화해 건설업 분야의 상생협력 터전을 마련해갈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건설물량의 전반적인 감소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계획이 지역건설산업 활력 제고의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정부, 시·군 등과 협력해 지역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13)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18일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공포·시행

- 안전관리비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항목 추가
- 품질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해 안전관리비 항목을 확대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됨을 밝혔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안전관리비 항목 확대

- 안전관리비 항목에 무선통신 및 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비용을 추가하여,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등 첨단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를 통해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공사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19.4월)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2)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로 적정 공사비 확보

- 입찰공고 시 발주자는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품질관리비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품질관리비가 입찰과정에서 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양성을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중 현장에 배치되어 시험·검사 업무를 전담하는 최하위 등급의 건설기술인(시험관리인)에 대하여 중급 건설기술인 이상 참여를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 확대* 하여 초급건설기술인의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토록 하였다.

* 특급대상 : (현행) 특급 1, 중급 2 → (개선) 특급 1, 중급 1, 초급 1

고급대상 : (현행) 고급 1, 중급 2 → (개선) 고급 1, 중급 1, 초급 1

- 한편, 건설공사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의 배치기준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되고,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련 개정 규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 발주자는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

* 무선설비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

** 무선통신 :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

□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p>< 스마트 개인안전보호구 > 안전모,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보음, 위험지역 접근 경고</p>
		<p><건설장비 접근 경보시스템> 장비와 작업자와의 충돌위험 감지를 위한 경보 및 장비정지</p>
		<p><붕괴위험경보기> 비계, 거푸집,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 붕괴 위험 감지</p>
		<p>< 스마트 터널 모니터링 시스템 > 터널내부 작업인원 및 장비 위치파악 비산먼지 등 작업환경 자동측정 등</p>
		<p><스마트 건설 안전통합 관제시스템> 작업인원 및 장비 원격관제, 붕괴·화재·침수 등 현장 긴급 재해 대응</p>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O44-201-3579)

코로나19에 따른 건설산업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칩니다.

- 김현미 장관, 12일 건설현장 찾아 방역상황 점검 및 피해극복 간담회 개최
- 방역강화, 공제조합 주관 특별 융자, 근로자 보호 등 적극 추진키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건설현장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에 따른 생활애로가 우려되는 현장근로자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 김 장관은 3월 12일(목) 평택소사별 LH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주요 공공기관, 업계관계자, 방역담당자 등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 (공공기관) LH,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 (업계관계자) 평택소사별 A-5BL 현장 원·하도급사 (현장근로자) 방역담당자, 현장 기능인력 등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으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먼저,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 두 조합은 조속히 내부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오는 16일(월)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두 공제조합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 또한 공제 조합들은 3개 보증*의 수수료 인하와 함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3.16~6월말)하여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보증수수료 인하) 계약 이행 보증, 공사 이행 보증, 선금금 보증

** (선금금 공동관리) 공사 선금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
(동의범위를 현재 선금금의 35% → 17.5% 수준으로 축소)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공사중단 등 피해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조정도 지원한다.

○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하였고,

○ 각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며, 앞으로도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상황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독활동, 종사자 마스크 및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건설현장의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배포하였고(제4판 3.3), 공사비에서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1.31)한바 있다.

○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건설현장의 바이러스 유입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합치기로 뜻을 같이 하였다.

□ 한편, 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 '18년부터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중인 **적정임금제**는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내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 체불방지를 위해 '19.6.19일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도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 만회 등을 위한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관(O44-201-3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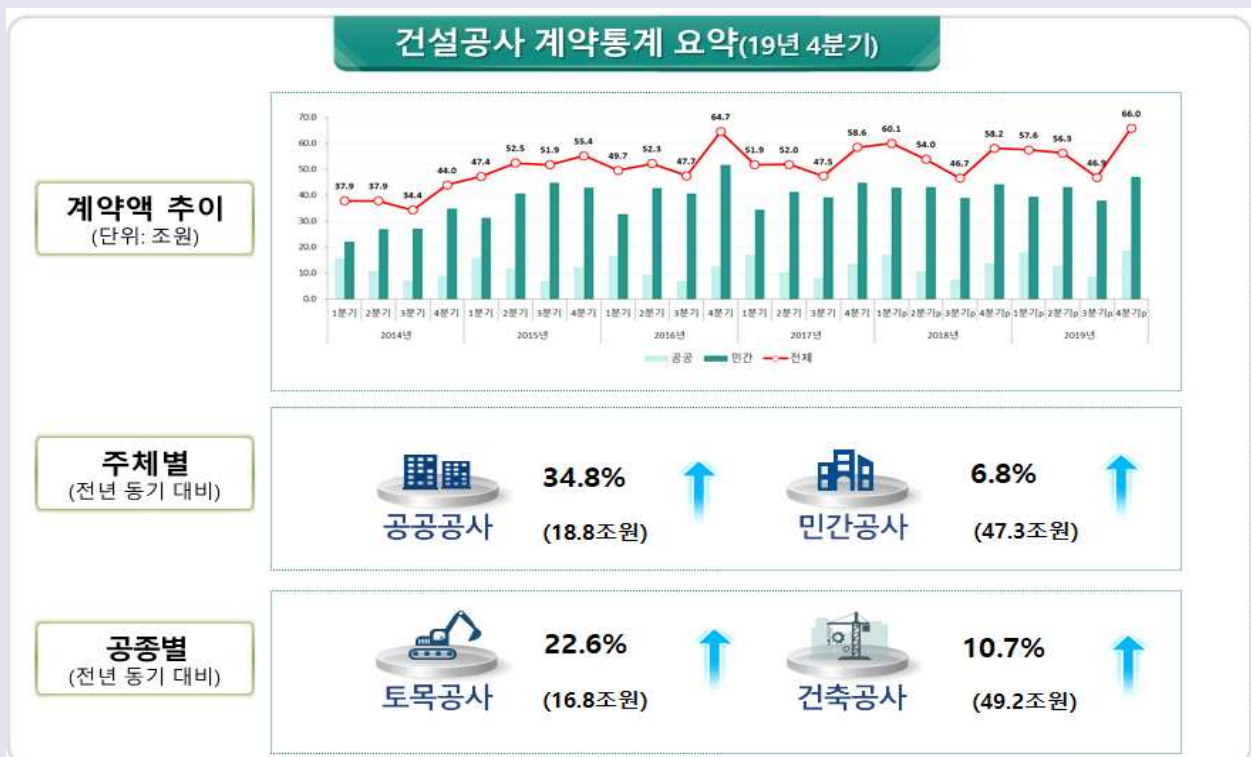
'19.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

공공과 민간공사 계약액 모두 증가..연간 계약액은 3.6% 증가한 226.9조 원

□ '19.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 계약 시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

○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주체별 · 공종별 계약액

□ (주체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4분기 18조 8천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 민간부분은 47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168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19.4분기 16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6% 증가했으며, 연간으로는 철도와 지하철 공사계약 등이 증가하며 전년대비 9.5% 증가한 64조 1천억 원을 기록했다.
- 한편, 건축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 공사계약 증가로 '19.4분기 10.7%(49조 2천억 원), '19년 연간으로는 1.5%(162조 8천억 원) 증가했다.

2. 기업 규모별 계약액

- '19.4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8조 4천억 원(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 51~100위 기업 5조 7천억 원(41.1% 증가), 101~300위 기업 4조 7천억 원(18.9% 감소), 301~1,000위 기업 4조 6천억 원(3.1% 증가), 그 외 기업이 22조 5천억 원(7.3% 증가)이었다.

* KISCON에 통보된 전년도 계약 금액의 총합 기준으로 기업 규모 순위 재집계

- 지난해 연간 단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이 92조 5천억 원(전년 대비 2.0% 증가), 51~100위 기업 14조 2천억 원(12.8% 증가), 101~300위 기업 17조 7천억 원(3.3% 감소), 301~1,000위 기업 19조 4천억 원(10.8% 증가), 그 외 기업이 82조 8천억 원(4% 증가)이었다.

3. 지역별 계약액

- '19.4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3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32조 8천억 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38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조 8천억 원으로 12.8% 증가하였다.

□ 지난해 연간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11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110조 원으로 4.8% 감소하였다.
-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13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92조 9천억 원으로 0.6% 증가하였다.

□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누리집 (stat.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건설공사계약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1. 건설공사계약통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집계·분석한 자료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계약한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가 대상임**
2. 통계청에서 매월 조사·발표하고 있는 건설 경기 동향조사상의 **건설수주와의 증감 변동 방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의 차이**에 기인함
 - ① 건설공사계약통계가 종합·전문건설업체의 1억 원 이상 원도급공사 전수를 대상으로 집계하는 반면, 통계청 건설 경기 동향조사는 전전년도 건설업조사 기성액 기준 상위 54%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모집단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②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직영공사가 제외된 반면, 통계청 조사는 직영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 ③ 건설공사계약통계는 당해연도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통계청 조사는 총 공사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④ 두 기관 간 세부 조사·신고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연간 보도자료 공표 일정(*공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3. 27(금)
 - 2020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6. 26(금)
 - 2020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9. 25(금)
 - 2020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통계 : 2020. 12. 24(목)
4. 통계상 수치는 반올림한 것이므로 세부항목간 수치와 전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표되는 성장률(증가율)은 원 단위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한 수치로 공표된 조 원 단위의 금액으로 계산한 숫자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O44-201-4597, 4962)

교량난간 등 소규모 파손도 ‘안전조치 의무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사각지대 없는 안전관리로 국민안전 확보

-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과 같은 소규모 파손에 대하여도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되며,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의 중대한 결함외에 추가로 안전조치가 의무화 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를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소규모 파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더라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 ’ 18.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 솟음(非중대한결함)으로 차량 60여대가 파손된 사고로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하였으나,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없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였다.

□ 이번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규모 파손 안전관리 강화)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사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부위에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는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 ' 19.8.20)되었고,

-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①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②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의 파손 ③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으로 규정하였다.

○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일반제원 ② 설계도서 ③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지속·의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업체 등의 명단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or.kr)에 1년간 게시하여 부실점검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부실점검을 방지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지만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O44-201-459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42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가 부실하다고 평가할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339호, 2020.1.7. 공포, 2020.4.8. 시행)됨에 따라 부실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하고, 보수·보강 조치 등의 세부사항에 중대한 결함 외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적용하는 한편,

기존에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하여 기술심의를 거친 결과는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 보수·보강 조치 대상 등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포함(안 제8조, 제9조)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결함 외에 사용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에 대하여도 보수·보강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일반사항, 수행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포함토록 정비
나. 제1·2종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제3종시설물 범위의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기준 추가(안 제55조, 별표 22)

1) 제1종·2종시설물의 성능평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 신설

2) 기존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비용의 산정 기준에 교량, 터널 및 건축물의 제3종시설물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 추가

다.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대상 확대(안 제63조) 부실점검방지를 위해 점검·진단의 부실 여부를 평가하는 대상에서 기술심의 및 기술자문을 거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제외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

라. 부실점검의 세분화기준 규정 및 평가기준에 과락제도 추가(안 제76조)

- 1) 부실점검이 그 정도에 따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는 세부기준을 정비
- 2) 점검·진단 결과의 중요항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평가된 경우 부실로 구분하는 과락제도 도입

마.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시정 명령 근거 마련(안 제87조)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100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을 따름

3. 의견 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4월 17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시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1) 주소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2) 팩스 : 044-201-358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전화 : 044-201-35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24] [대통령령 제30542호, 2020. 3. 2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17호, 2019. 4. 16. 공포, 2020. 4. 17. 시행)됨에 따라 배출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542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7조 및 제8조)을 삭제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배출자로 한정한다)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과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과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거목(중전의 과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파. 배출자가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자신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2	50	70	100
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한 경우	법 제66조제3항 제1호의3	50	70	100

부칙

이 영은 202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8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Pilot터널을 굴착 후 선지보재를 시공하고 확대 굴착하는 터널공법

□ 고시번호

- 제2019-660호(2019.11.26)

□ 신기술 개발자

- (주)현이앤씨, (주)삼보기술단, (주)건화
(주)동명기술공단중합건축사사무소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78
- 기술분류 : 토목 > 터널 > 터널 구조물 설치

□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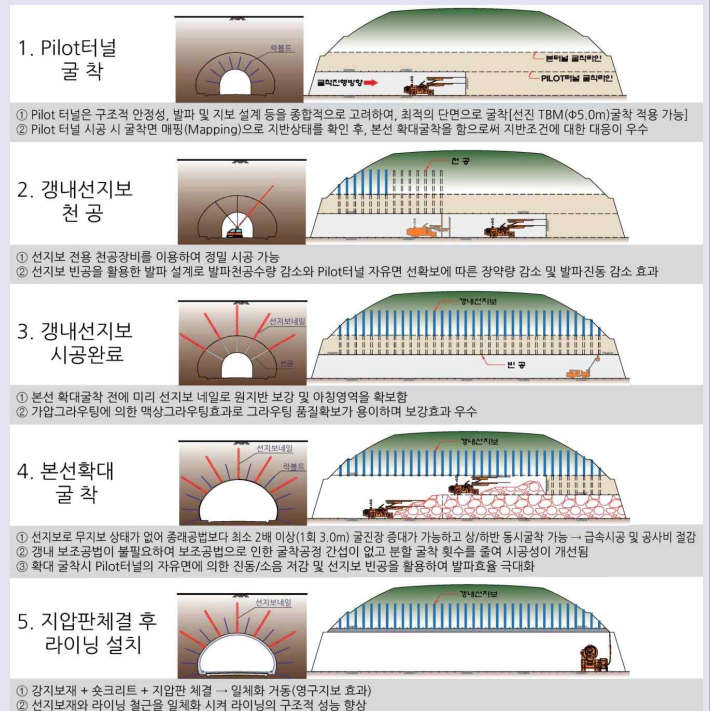
- Pilot 터널 굴착 후 네일과 압력그라우팅을 사용하여 양호하지 않은 원지반을 보강하고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는 공법으로, 본 터널 굴착 후 갱내 선지보재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등을 슛크리트와 지압판으로 일체화 시공하는 터널 굴착 공법

□ 내용

- Pilot 터널을 굴착 후 본 터널의 굴착면 방향으로 선지보재(네일 등)를 설치하고 압력그라우팅으로 양호하지 않은 원지반을 보강한 후에 본 터널을 확대굴착하는 공법으로 후지보재(슛크리트, 록볼트 등)와 철근망(RSC, Reinforced Steel Cage) 또는 강지보, 격자지보 등으로 본 터널을 지보하는 기술(KPST공법 : Korean Pre-Support Tunnelling Method)

□ 보호기간

- 2019-11-26 ~ 2027-11-25



<신기술 시공절차 및 방법>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되는 지붕보 공법 (LTS 공법)

□ 고시번호

- 제2019-754호

□ 신기술 개발자

- (주)해성기공, (주)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주)한화건설, 에스케이건설(주),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79
- 기술분류 : 건축 > 철골 > 기타 철골

□ 범위

- 상하부 플랜지는 판폭두께비 $\lambda \leq 1.40$ 을 만족하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두께 3.2mm 이상으로 판폭두께비 $hw/tw \leq 600$ 을 만족하는 골형강판으로 하여 플랜지와 웨브를 양면 전질이 모살 용접하여 제작되며 기둥 중심간 거리 70m 이하에 적용되는 지붕보 공법

□ 내용

- 신청기술은 공장, 창고, 물류창고, 비행기 격납고, 대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넓은 무주공간이 필요한 건축물(구조물)의 지붕보로 적용되는 것으로, 상하부 플랜지는 동일한 치수의 각형강관으로 하고, 웨브는 얇은 강판을 파형 또는 제형으로 가공한 후 상하부 플랜지를 구성하는 각형강관에 용접 조립하여, 별도의 중간스티프너로 보강하지 않더라도 전단력에 대한 국부좌굴 강도가 우수하고, 휨강도와 전단강도가 뛰어난 역학적 성능을 가진 골형 웨브와 각형강관 플랜지로 구성된 지붕보 기술이다.

□ 보호기간

- 2019-12-17 ~ 2027-12-16

①공장제작	②기둥 설치	③LTS지붕보 설치
		
LTS보를 구성하는 골형 웨브와 각형 강관 플랜지END PLATE를 조립 용접한다. 웨브와 플랜지는 자동 용접한다.	공장 제작된 기둥을 현장에 안입하여 설치한다. 설치후 수직도를 확인한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LTS보를 설치 한다. 집합방법은 BOLT 집합으로 한다.
④작은 보 설치	⑤브레이스 설치	⑥ 2-5번을 반복한다
		
설치된 1열 LTS보와 2열 LTS보 사이에 작은 보를 설치한다.	작은 보와 작은보 사이에 브레이스를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2-5번을 반복하여 건물을 완성한다.

< 시공절차 >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을 이용한 강교량 피로균열 자동 검사 기술 및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 기술

□ 고시번호

- 제2019-964호(2020.01.02.)

□ 신기술 개발자

- 한국과학기술원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0
- 기술분류 :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 범위







- 강교량의 취약부에서 발생하는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비선형 초음파 변조 기법 기반의 피로균열 검사 기술(검사 가능 균열 폭 30 μ m 수준) 및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 기술

□ 내용

- 이 신기술은 강교량 내부의 용접부 및 응력 집중부 등과 같은 취약부에서 발생하는 국부 피로균열을 조기에 검출하기 위한 비선형 초음파 변조기법 기반의 피로균열 검사 기술(검사 가능 균열 폭 30 μ m 수준)과 현장적용성과 보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착식 무선 압전센서 기술이다

□ 보호기간

- 2020-01-02 ~ 2028-01-01

① 시험 장비 교정	② 시험부 요철 및 이물질 제거	③ 압전센서 부착 및 검사 시스템과 연결
		
표준시험시편을 이용해 피로균열 검사 시스템의 이상이 있는지 확인 및 교정한다.	시험부 표면에 존재하는 요철/이물질 등에 의해 압전센서 부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라인딩, 세척 작업을 통해 제거한다.	시험부에 압전센서를 부착하고, 케이블 등을 이용해 검사 시스템과 연결한다.
④ 균열 검사	⑤ 시험부 세정	⑥ 시험부 제도장
		
검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균열을 검사하고, 균열 유무를 파악한다.	시험부 표면에 붙은 이물질 등을 닦아내고 시험부를 깨끗하게 한다.	시험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장한다.

<신기술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더블 리브 골형 강판과 역삼각형 래티스거더를 이용하여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D-Deck 공법)

□ 고시번호

○ 제2019-965호(2020.01.02.)

□ 신기술 개발자

○ (주) 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주) 엔아이스틸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1
○ 기술분류 : 건축 > 철근콘크리트 > 거푸집

□ 범위

○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단 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의 골에 거치(리브의 상부판에 형성된 단턱에 단순거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노치 가공 후 절곡된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된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 내용

○ 단위 폭에 2개의 리브가 형성된 골형 강판의 리브 사이 골에 2개의 상부 철선과 1개의 하부 철선을 래티스 철선으로 연결한 역삼각형 형태의 래티스거더가 설치되고, 골형 강판의 각 리브 단부는 경사형 마구리로 폐쇄되어 시공 중 하중은 강판이 지지하고 사용 중 하중은 래티스거더와 추가로 배근되는 보강철근이 지지하도록 하는 장경간이 가능한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 공법

□ 보호기간

○ 2020-01-02 ~ 2028-01-01

<p>① 데크반입</p> 	<p>② 자재검수</p> 	<p>③ 양형</p> 
<p>• 공장에서 골형 강판 및 래티스거더를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p>	<p>• 반입된 부재의 수량 및 치수 등과 같은 항목을 검수</p>	<p>• 주변의 안전공간을 확보하여 부재를 양형</p>
<p>④ 데크 판개</p> 	<p>⑤ 데크 간 연결부 나사 고정</p> 	<p>⑥ 래티스거더 설치</p> 
<p>• 데크 판개 시 2인 1조로 하여 보 거푸집 상부에 데크를 판개</p>	<p>• 내식성 재질의 직경나사를 사용하여 700mm간격으로 나사 고정</p>	<p>• 골형 강판 사이의 단턱에 래티스거더를 설치</p>
<p>⑦ 보강근 및 배력근 배근</p> 	<p>⑧ 콘크리트 타설</p> 	<p>⑨ 콘크리트 면처리 및 양생</p> 
<p>• 구조도면을 참고하여 보강근과 배력근을 설치</p>	<p>• 과도한 집중하지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콘크리트 타설</p>	<p>• 콘크리트 타설 후 표면의 균열을 방지하고, 소요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에서 양생</p>

<신기술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 콘크리트(UPC) I형 거더 제작 및 시공법

□ 고시번호

- 제2020-258호(2020.03.13.)

□ 신기술 개발자

- (주)씨알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신기술 개요

- 지정번호 : 884
- 기술분류 :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 범위










- 최적충전밀도 배합에 의한 초고강도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연성거동 유도 특성을 가진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하여 저형고, 경량 및 고내구적 특성을 가진 프리스트레스트 초고강도(80~150MPa) 콘크리트 I형 거더 교량 공법

□ 내용

- 이 기술은 강섬유와 철근집합체를 병용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I형 거더의 형고를 줄이고 자중을 경감시키며, 극한상태 거동을 연성화하고,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특성을 이용하여 1차 프리스트레스 긴장으로 설계하중을 부담할 수 있는 I형 교량 거더에 관한 기술임.

□ 보호기간

- 2020-03-13 ~ 2028-03-12

① UPC 거더 공장 제작	② 철근, 철근집합체 조립	③ 쉬스관, 정착구 설치
		
공장에서 제작을 위한 바닥판 수평 및 준비작업 실시	설계된 도면대로 철근 및 철근집합체를 배근한다.	거더 양측 하부에 쉬스관 배치 및 정착구를 설치한다.
④ 강재거푸집 조립	⑤ 초고강도 콘크리트 타설	⑥ 48시간 90°C 증기양생
		
거푸집을 조립한다.	조립된 거푸집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타설된 콘크리트를 48시간 90°C 증기양생을 한다.
⑦ 분절 거더 셋팅 및 집합	⑧ 강연선 긴장	⑨ 거더 거치
		
거푸집 해체 후 분절거더를 현장으로 이송하여 셋팅한다.	분절거더 셋팅 후 강연선 인장을 한다.	완성된 거더를 거치한다.

<신기술 시공절차>

자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O31-389-6313)

2020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1)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1회 '20.1.15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고성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사업	· 위 치 : 고성군 회화면 일원 · 공사내용 : 수영장 및 생활관건립 · 공 사 비 : 151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1년	고성군 (관광지사업소)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양산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반시설공사	· 위 치 : 양산시 유산동 일원 · 공사내용 : 기반시설정비·확충 · 공 사 비 : 269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양산시 (투자유치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금서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 위 치 : 산청군 금서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정비 L=3.9km · 공 사 비 : 157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조건부 채택
제2회 '20.2.27 (서면심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	밀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 위 치 : 밀양시 무안면일원 · 공사내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78톤/일 · 공 사 비 : 268억원 · 공사기간 : 2019년~2023년	밀양시 (환경 관리과)	기본설계 기술제안 (가중치기준)
	설계공모 세부평가기준	화목맑은물순환센터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 위 치 : 김해시 화목동 일원 · 용역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 역 비 : 5.1억원 · 용역기간 : 2020. 4. ~ 2020. 9.	김해시 (하수과)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거창군 거창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사업	·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1식 · 공 사 비 : 206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거창군 (수도사업소)	조건부 채택
	실시설계 타당성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 위 치 : 합천군 묘산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수처리시설 증설1식 · 공 사 비 : 165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3년	합천군 (상하수도과)	조건부 채택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밀양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일원 · 공사내용 : 교량 및 도로포장1식 · 공 사 비 : 130억원 · 공사기간 : 2020년~2022년	밀양시 (도시재생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1)

2020년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1)

일시	요청사항	공사명 (용역명)	공사 및 용역 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제3회 '20.3.23	실시설계 타당성	용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밀양시 단장면 일원 · 공사내용 : 하천개수(L=4.2km) 및 교량 재가설 5개소 · 공사비 : 146억원 · 공사기간 : 2020년 ~ 2022년 	밀양시 (안전재난관 리과)	조건부 채택
	입찰안내서	창원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창원시 현동 일원 · 공사내용 : 공공주택 및 부대시설 건립 (12개동 1,193세대) · 공사비 : 1,508억원 · 공사기간 : 2021년 ~ 2024년 	경남개발공사 (건축사업팀)	조건부 채택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정성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적정성 심의 *국토교통부 평가기준 개정사항 반영 등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채택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2921

□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정기검정 시행일정

등급	회 별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 (필기시험합격자결정)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험 시 행	합격(예정)자 발 표		원서접수	시 험 시 행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방문제출 (휴일제외)	인 터 넷		
기술사	제120회	1.7~1.10	2.1(토)	3.13	3.16~3.26 (휴일, 3.18 제외)	3.16~3.17, 3.19~3.20	5.9 ~5.19	6.5
	제121회	3.16~3.17, 3.19~3.20	4.11(토)	6.5	6.8~6.17 (휴일제외)	6.8~6.11	7.18 ~7.28	8.14
	제122회	6.9~6.12	7.4(토)	8.28	8.31~9.9 (휴일제외)	8.31~9.3	10.17 ~10.27	11.13
기능장	제67회	3.10~3.13	4.5(일)	4.10	4.13~4.23 (휴일, 4.15 제외)	4.13~4.14, 4.16~4.17	6.13 ~6.28	7.10(1차) 7.17(2차)
	제68회	6.2~6.5	7.4(토)	7.17	7.20~7.29 (휴일제외)	7.20~7.23	8.29 ~9.13	9.25(1차) 10.8(2차)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2.25~2.28	3.22(일)	4.3	4.6~4.16 (휴일, 4.15 제외)	4.6~4.9	5.9 ~5.24	6.12(1차) 6.26(2차)
	제2회	5.12~5.15	6.6(토)	6.26	6.29~7.8 (휴일제외)	6.29~7.2	7.25 ~8.9	8.28(1차) 9.11(2차)
	제3회	7.28~7.31	8.22(토)	9.11	9.14~9.23 (휴일제외)	9.14~9.17	10.17 ~11.1	11.13(1차) 11.27(2차)
	제4회	8.25~8.28	9.20~ 9.26	10.8	10.12~10.21 (휴일제외)	10.12~10.15	11.14 ~11.29	12.11(1차) 12.24(2차)
기능사	제1회	1.14~1.17	2.9~2.15	2.28	해당없음	3.2~3.5	4.4~4.19	4.29(1차) 5.8(2차)
	제2회	3.24~3.27	4.19~4.25	5.8	해당없음	5.11~5.14	6.13~6.28	7.10(1차) 7.17(2차)
	제3회	6.2~6.5	6.28~7.4	7.17	해당없음	7.20~7.23	8.29~9.13	9.25(1차) 10.8(2차)
	제4회	9.8~9.11	10.11~10.17	10.23	해당없음	10.26~10.29	11.28~12.13	12.24(1차) 12.31(2차)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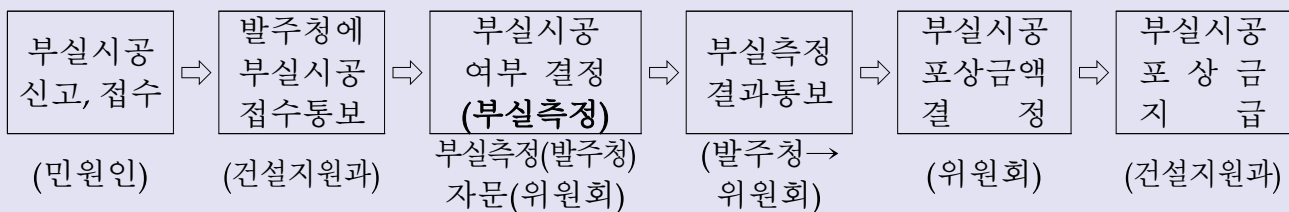
I. 부실시공 신고대상

- 경상남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한 도급액 10억이상 건설공사
- ※ 대상공사 : 건설정보(www.gyeongnam.go.kr) 홈페이지에 게재

II. 부실시공 내용

- 주요 구조물의 시공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 인하여 토사붕괴 또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등

III. 처리절차



IV. 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1등급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2등급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부실시공 3등급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
- ※ 부실벌점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8

V.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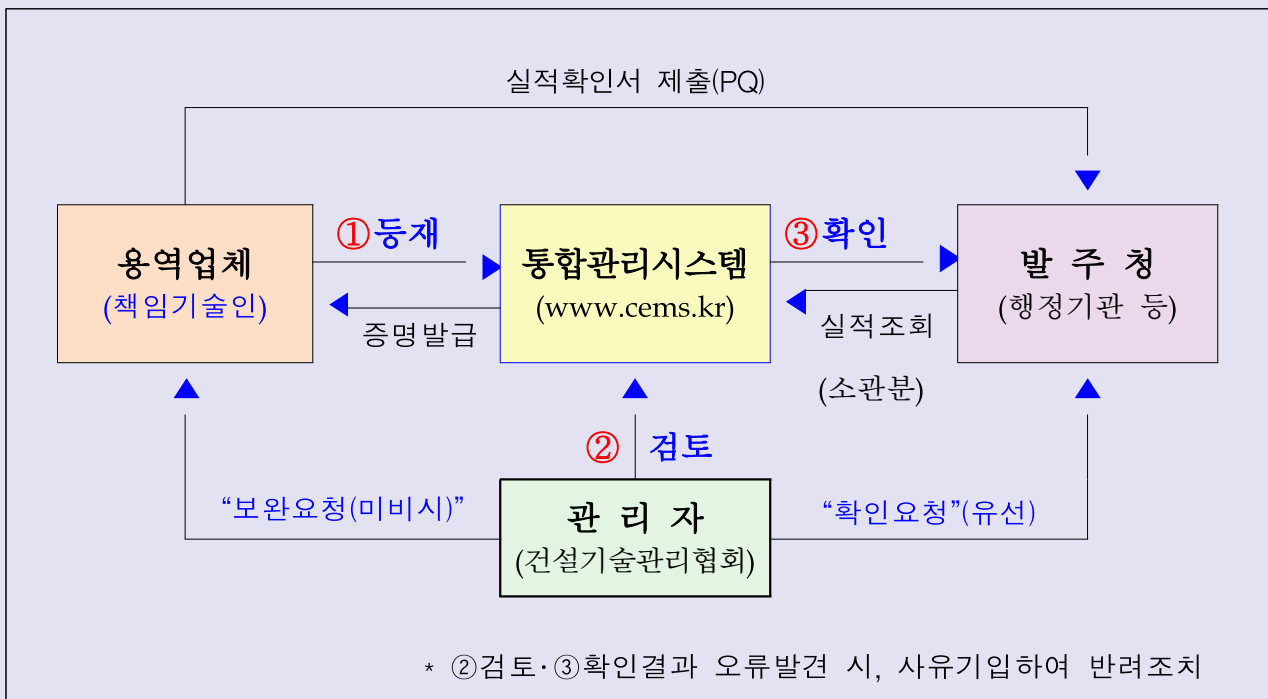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2~2926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상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제출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6)

□ 「건설기술용역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안내

- 관련 법 : 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 입력대상 용역 : 설계, 감리, CM 등 공공분야의 건설기술용역
- 입력시기 : 용역의 계약체결 후, 설계 변경 후, 준공 후 10일 이내 기술자 변경시 수시 입력
- 시스템 사용자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사업관리담당자
용역사 대표자 및 용역책임자(원도급·하도급)
- 시스템 접속 URL : www.cems.kr
-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는 '14. 5. 23. 이후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만 건설기술 용역에 대한 실적 관리 및 확인 가능함.
- 주요 조회가능 항목
 - 건설기술용역 수주 및 수행실적(규모별, 공종별, 업체별)
 - 참여기술자 현황(중복배치, 중첩도, 교체현황 등)
 - 건설사업관리업체에 대한 교체빈도
 - 제재현황(영업정지, 과징금, 벌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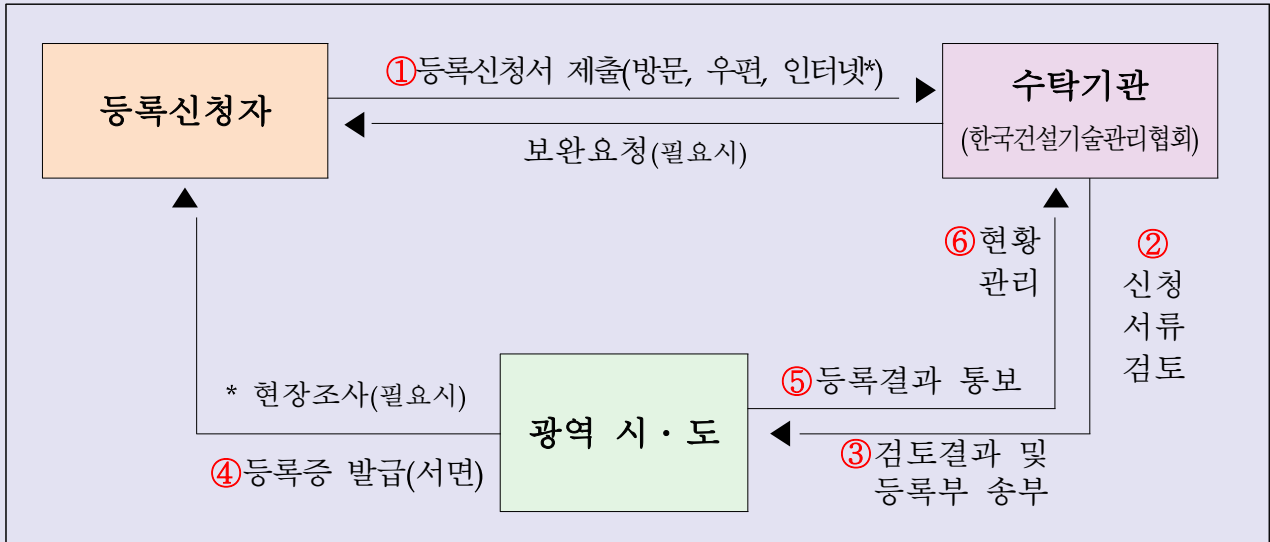
※ 용역실적 등재·관리 절차



■ 자료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02-3460-8641)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무 처리요령」 안내

- 2014. 5. 23.자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품질검사 등의 업역이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단일화 되었으며, 이와 관련 등록 및 변경등록 등 민원의 접수·확인 및 관리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를 위탁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



<①단계> : 등록신청서 제출(신청인)

<②단계> : 신청서 접수, 고유 관리번호 부여, 서류 검토(관리협회)

<③단계> : 등록서류 검토결과 통보(관리협회→해당 시·도)

<④단계> : 등록증 발급(해당 시·도→신청인)

<⑤단계> : 등록결과 통보(해당 시·도→관리협회)

<⑥단계> : 등록결과 접수, 용역업자 등록번호 등재·관리(관리협회)

■ 자료 : 도 건설지원과(O55-211-2925)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원지원실
(O2-3460-8654)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정보>도시/교통/건설>건설정보>기술정보지)

게재 요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2923~6

FAX : (055)211-2919

e-mail : naminan@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